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문자발신자는 현직 정무직 공무원

더불어민주당 경선투표권을 쥐고 있는 관리당원을 포함해 수 만명의 당원들에게 실명이 적힌 신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당사자가 현직 정무직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이자 유력 주자인 A씨는 지난 1월2일 신년 인사와 업무 성과를 담은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광주지역 민주당 당원 10만여 명에게 발송했다.

발송자의 휴대전화는 010-9229-XXXXX로, A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이다.

그러나 대량문자 동시발송 사이트 가입자는 A씨가 아닌 A씨의 실질 비서로 알려진 B씨로 확인됐다. B씨는 정무직 5급 공무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B씨가 문자발송 웹사이트에 가입한 뒤 발송자 입력란에만 A씨와 A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했고, 수신자들은 A씨가 보낸 문자로 알고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한 차례 발송에 200만원 안팎이 드는 발송 비용으로, 통상 절차대로 사이트 가입자가 필요금액은 충전한 뒤 발송했다면 선거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실명 수신자들의 명단을 어떤 방식으로 입수했는지, 명단 입수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를 구했는지 등이 관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자가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 특정 선거구 경선 유권자(관리당원)에게 집중됐다면 사전선거 운동 위반 소지도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지역 정가는 보고 있다.

B씨는 이에 대해 "문자 발송과 발송 비용, 개인정보 사용 등의 여부 등은 제가 말할 수 있는 사안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자는 (A씨가) 오랜 기간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축적해온 인물 DB를 토대로 보냈을 뿐, 선거용으로 불법 취득하거나 이용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문자 내용에 대해서도 "고위 공직자인 A씨의 업무성과를 알리고 새해인사 차원에서 올린 통상적인 메시지로 정치적 의미를 담은 건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와 별개로 당원 명부 유출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중이다. 이를 위해 유출 의혹 사건이 터진 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당원 관리용 PC 등을 건네받아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조사가 실시할 계획이다. 당원관리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인적, 물적 조사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당은 이와 관련 "공

광주경찰청, 문자 발송 사이트 가입자 5급 공무원

B씨 "선거용으로 불법 취득·이용한게 아니다"

정 경선을 위해 온라인을 포함해 관리당원의 명부는 조작국에서만 취합한 후 엑셀파일로 입력 관리하고 복사할 경우에도 중앙당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유출 의혹이 불거진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당은 유출 의혹이 불거진 직후 사무총장 명의로 전국 17개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철저한 당원 명부 관리를 지시한 바 있다. 불과 2~3개월 전 가입한 신규 관리당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 누가 어떤 경로로 유출했는지 등이 집중 조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일부 당원들의 피해 사례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봉인된 당원관리 PC를 확보하는 대로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밝혀 나갈 계획"이라며 "문자메시지의 경우 발신자를 확인하고 역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새해 첫 병역판정검사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내연녀 아들 폭행 실명케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내연녀의 어린 아들을 폭행, 실명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일 오전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이모(27)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단 1심과 달리 이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이를 유죄로 인정할 것이다.

이를 방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친모 최모(36·여) 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많거나 적지 않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또 "폭행 당시 어린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사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씨의 살인미수(주위적 청구)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반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살인미수죄 대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6년 7월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회에 걸쳐 전남 목포 자택에서 내연녀인 최 씨가 일을 나간 사이 최 씨의 아들(당시 5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폭행으로

어린 아동을 한쪽 눈이 없는 영구적 장애 상태로 만들고, 담관을 손상시켜 몇개월 뒤 간 손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상태에 빠뜨렸다"면서 "이처럼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었고도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또 "이 씨의 범행이 비록 살인행위에 미치지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행위로 판단된다"면서 "많은 시민의 공분을 사는 등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상한(13년)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친모 최 씨에 대해서도 "이 씨의 폭력 속에서 오로지 어머니를 믿고 찾았던 피해 아동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면서 "직접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니며 생계를 위해 풀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고소 취하서 위조 체불 사업주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봉현)는 자신에 대한 고소 취하서(처벌 불원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위계공무집행 방해)로 임금체불 사업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자신의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일부 근로자들의 명의를 이용, 고소 취하서를 위조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 혐의와 함께 두 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 씨는 이중 한 건의 재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임금 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합의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이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기각결정이 재심 사유나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형법상 문서위조죄로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결혼 미기 거액 뜯어낸 40대 남성 추적중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용규)는 유망 사업가 행세를 하며 30대 미혼 여성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추적중이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30대 여성 B 씨로부터 3억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가 행세와 함께 B 씨와의 결혼을 전제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터넷 결혼 사이트를 통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전남대 학과사무실 불...교직원 대피 소동

광주의 한 대학교 학과사무실에서 불이 나 교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10시20분께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3호관 모 학과 사무실에서 불이 나 119에 의해 13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사범대 교직원과 연구원 등 3명이 급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했으며, 사무실 17㎡ 중 10㎡가 타 소방서 추산 116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빈 사무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공항서 폭발물 의심 가방 발견 대피소동

항공기 운항이 종료된 시각 제주국제공항에서 폭발물 의심 가방이 발견돼 공항 내 상주 직원 1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 오후 11시10분께 항공기 운항 종료 후 제주공항 청사 정밀 수색에 나선 공항경찰대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행용 가방 3개를 발견했다.

공항경찰대는 가방이 EOD(Explosive Ordnance Disposal·폭발물처리반) X-레이 관측결과 폭발물 의심 물체로 판단돼 신속히 공항 내 대피방송을 실시했다.

당시 공항 내에 근무 중이던 야간 작업자와 상주직원 약 130여명은 대피방송을 듣고 급히 공항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국정원, 기무사, 공항공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 조사 결과 가방은 단순 여행용으로 확인됐다.

가방 안에는 여성용 머리카락 손질기인 일명 '고데기'와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이 한데 섞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항 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20대 여성 3명이 화장실에 가방을 가지고 들어가 빈몸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다음 날 오전 3시30분께 공항을 다시 찾은 여성 3명에 대한 신원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에서 제주로 여행을 온 관광객으로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 가방을 공항 화장실에 놓아두고 제주 시내 PC방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방 해체과정에서 여행용 캐리어가 파손돼 관련 규정에 따른 손실 보상을 검토 중이다.

